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

(하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7
----------	------

발의연월일 : 2017. 4. .

발 의 자 : 하경숙 · 서경환 · 권태호
김경환 · 이복희 · 신성봉
김영길 · 천병태 · 이효상
김순점 · 강혜순 (11명)

I. 주 문

- GMO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준말로써 식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하고 변형시켜 만든 식품으로 해충과 질병에 강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러 실험을 통해 생태계 파괴 및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에 나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국내 소비량이 높은 식용유와 간장, 당류 등의 주요 식품군은 원재료 가공 후를 기준으로 삼아 표시대상에서 제외시켜 헌법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만큼 ‘GMO 완전표시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이다.

II. 제안이유

가. GMO란 식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하고 변형시켜 만든 식품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콩·옥수수·감자 등 50여개 품목이며 우리나라는 수년째 식용 GMO 수입 1위국을 기록하고 있다.

나. 금년 2월부터 GMO 표시 제도가 확대·시행되면서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재료로 GMO를 사용했다고 해도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시책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대부분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표시제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GMO 표기 면제 기준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발 송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붙 임 :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 1부. 끝.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GMO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식품을 GMO 식품으로 표시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범위가 확대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져버린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

즉, 정부는 GMO 표시제 확대조치에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와 간장, 당류 등은 현행처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Non-GMO 표시 역시 GMO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돼야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오히려 민간에서 자율로 추진 중인 Non-GMO 표시를 규제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이며 대표적인 GMO 품목인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지난해 기준 4.1%에 불과하고 콩은 32.1%에 그치고 있다.

결국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량의 70% 이상이 GMO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GMO를 둘러싼 안정성 논란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 국민의 권익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25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하나. 민간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Non-GMO 표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충족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GMO 표시법을 개정하라.

2017. 4.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